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20-01-08

## 대전지방법원

### 제2민사부

### 결정

사    건          2019라10030 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
채권자, 항고인      A  
채무자, 피항고인   B  
제1심 결정         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3. 21.자 2018카불114 결정  
환송 전 결정          대전지방법원 2018. 7. 26.자 2018라10076 결정  
환 송 결  정          대법원 2018. 12. 21.자 2018마6031 결정

### 주    문

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.

### 이    유

#### 1. 기초사실

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항고인은 C(채무자의 부친이다)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고단56 사기 사건에서 2008초기57호로 2008. 5. 14. 7,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고, 위 배상명령은 2008. 5. 22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



나. C의 배우자이자 채무자의 모친인 D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드단1820호로 C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여 2007. 11. 14. D과 C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C은 위 사기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 후 몇 개월이 지난 뒤인 2009. 1. 22.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. C의 상속인으로는 채무자의 누나인 E(F.생)와 채무자가 있다.

다. 채권자는 2017. 3. 9. 채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배상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, 2017. 11.경 채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3865호로 위 배상명령과 관련한 채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라. 채무자는 2017. 3. 24.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7느단139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, 위 신고는 2017. 4. 28. 수리되었다. 채무자의 위 한정승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은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고, 소극재산은 항고인에 대한 위 배상명령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었다.

마.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배상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.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8. 3. 14. 채무자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, 이에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법원은 2018. 3. 21.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.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법원은 2018. 7. 26.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, 이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2018. 12. 21. 위 항고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.





## 2. 항고이유의 요지

채무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,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## 3. 판단

위 기초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, 즉 ① C에게 항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8. 5.경인데 당시 E는 만 18세, 채무자는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두 사람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C은 10개월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9. 1. 22.경 사망하였는데,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채무자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, ③ 채무자의 모친인 D은 2006년경부터 C과 별거하다가 C이 구속되기 이전에 이미 C과 이혼하였고, 그 무렵부터 채무자 남매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채무자 남매는 C 구속 후 몇 개월간 고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 없는 가정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원룸을 얻어 기거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항고인은 위 배상명령이 확정되고 C이 사망한 후에도 수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. 3.경에 이르러서야 채무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, 채무자는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채무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20-01-08

따라서 채무자의 상속 한정승인은 효력이 있으므로, 이를 이유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.

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2019. 9. 6.

재판장	판사	김용덕
	판사	곽희경
	판사	송승환

